성주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일자 : 2013년 5월 일
제 출 자 : 성주군수

1. 개정이유

○ 장학생 선발 시 제외되는 중복수혜자에 대한 제한 항목을 일부 개정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

2. 개정내용

가.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발기준 개선(안 제4조제3항)

· 성주군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이외의 타 기관·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학생에게 중복 수혜 할 수 있도록 선발기준 개선

나. 장학금액 개선(안 제6조)

· 장학금 지급총액은 등록금 총액 범위 내에서 지급

3. 참고사항

가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나.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다. 비용추계 미 첨부사유 : 별첨

라. 기 타

1) 일부개정조례(안) : 붙임과 같음

2)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과 같음

3) 입법예고(2013. 4. 4 ~ 4. 23) : 별도의견 없음

성주군 조례 제 호

성주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성주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장학생은 1세대 1인으로 하며 성주군에서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을 때는 이를 제외한다.

제6조 중 “전액을”을 “전액을 지급하고”로 하고, 제6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, 장학금 지급총액은 등록금 총액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선발) ①·② (생 략)	제4조(선발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장학생은 1세대 1인으로 하며 국가, 지방공공기관, 기타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을 때는 이를 제외한다.	③장학생은 1세대 1인으로 하며 성주군에서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을 때는 이를 제외한다.
제6조(장학금액)장학금은 고등학생은 공납금 전액을 대학생은 매학기 50만원을 지급한다. 다만, 예산의 사정에 따라 공납금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.	제6조(장학금액)----------전액을 지급하고----------. 다만, 장학금 지급총액은 등록금 총액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.